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의 중요특징

리 일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 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연지리적으로 유리하고 경제발전잠재력이 큰 지역들에 여러가지 류형의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법적, 경제적, 생활적조건들을 마련해주어 외국투자를 주동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시기 나라의 여러곳에 지방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 고 여기에 외국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는 다른 나라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나 우리 나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투자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 각 도들에 내오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는 다른 나라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다.

그것은 우선 경제개발구에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목적이 다르다는데 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경제개발구들에서는 외국투자를 저마다 끌어들이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들과 외국투자가들에게 상대적으로 우세한 특혜와 우대를 적용하면서 각이 한 투자유치전략을 실시하고있다.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경제개발수준과 투자환경, 하부구조조건 등에는 관계없이 일정한 류형의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그를 통하여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대체로 다른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일정한 지역에 경제개발구라는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고 여기에 다른 나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는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다. 그 하나는 나라의 전지역에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경험을 쌓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의 경제를 개혁, 개방하기 위한 길을 열자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여기에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목적 은 이와 전혀 다르다.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들에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려는 주요목적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진 오늘의 실정에서 나라의 전반적인 지역들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하루빨리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선진기술을 받아들이자는것이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반드시 쓰고 남는것이 있는 반면에 없거나 부족 한것들이 있게 된다. 문제는 나라의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없거나 부족한것들을 해결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각 도들의 경제개발구창설을 중시하고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흥미를 가지는 유리한 자연지리적환경과 합리적인 생산력배치조건을 리용하여 경제개발구를 창설하고 여기에 대한 외국투자를 허용하고있다.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들에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려는 다른 하나의 주요목적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키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는것이다.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 적대세력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

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다.

우리가 자연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각 도들에 여러가지 류형의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데서 옳바른 원칙들을 견지해나간다면 수많은 외국투자가들이 각기 자기의 요구에 맞는 대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할수 있으며 대외무역을 비롯한 대외경제관계의 폭을 더욱 넓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다.

그것은 또한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조 치가 매우 특혜적이라는데 있다.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특히 세금특혜조치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그것은 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게 특혜적인 세금조치를 실시하여야 외국투자가들이 거기에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 등을 해당 기업에 들이밀수 있기때문이다.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 대한 각종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 특히 세금특혜조치실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세금특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나라마다 일련의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특 혜적인 세금조치내용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세금의 종류가 대단히 적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6개이다.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거래세와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도시경영세와 자동차리용세로 구분)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도시경영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제개발구들에 투자하는 기업들과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많다. 실례로 어느 한 나라에서 지역적장려조치로서 실시하고있는 특혜적인 세금의 종류를 보면 류통세, 자원세, 소득세, 특정목적세를 비롯하여 7종에 17개 부류나 된다.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특 혜적인 세금조치내용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소득세률이 낮다는데 있다.

각 도 경제개발구의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서 지대밖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소득세률보다 11%나 낮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경제개발구들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률은 지대나 지대 밖이나 관계없이 대체로 세률이 같으며 그나마 결산리윤의 25%이상이다.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개인소득세률은 로동 보수에 의한 월로동보수액이 국가가 정한 소득액보다 작은 경우 면제되며 그 이상인 경 우에는 소득액의 5~30%의 범위에서 늘어나는 소득액에 따라 초과루진세률이 적용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그를 통한 외국투자사업이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투자와도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우선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투자가 우리 나라의 중앙급특수경제지대에 대한 외국투자이라면 각 도들에 창설 및 개발되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는 중앙급경제개발구와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개발을 다 허용하고 부지면적설정, 관리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권한이 부여된 외국투자이라는데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면적의 선정이나 여기에 투자하는 대규모의 외국투자대상에 대한 심의 및 개발과정은 대외경제성의 해당 기관이 직접 맡아 수행한다. 물론 경제개발구가 관리소속에 따라 중앙급경제개발구와 지방급경제개발구로 구분되는 조건에서 중앙급경제 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대상의 창설 및 개발승인은 대외경제성이 담당한다.

그러나 중앙급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심의와 개발당사자선정 등 개발권한에서 해당 도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있으며 더우기 경제개발구가운데서 지방급경제개발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외국투자에 대한 해당 도의 권한은 매우 크다.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경제개발구의 개발계획과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개발기업을 선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물론 이때에도 이와 관련한 모든 실무적사업들은 대외경제성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

그것은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투자는 투자면적과 규모가 비교적 크지만 각 도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는 상대적으로 투자면적과 규모가 작다는데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각 도들에 내오는 경제개발구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다.

경제개발구의 개발면적이 크지 않기때문에 이 지대에 대한 외국투자의 부담도 크지 않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계획과 세부계획을 실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지방마다 자체의 능력과 특색에 맞게 한번에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하여 개발을 하도록 할수도 있고 단계를 설정하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외국투자를 받아들일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투자의 법적기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지만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의 법적기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라는데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특수경제지대개발을 위한 외국투자활동의 기본법은 해당 지대에 따라 다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특수경제지대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체80(1991)년 12월 28일 라선지구를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하고 주체82(1993)년 1월 31일 처음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러차례 수정보충사업을 진행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라선지구를 특수경제지대로 개발운영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을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보충적인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그리고 대외경 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도록 하였으며 그의 기본법 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러한 법들은 자기 의 고유한 법적특성을 가지고 특수경제지대창설 및 개발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를 창설하고 운영하는데서 외국투자의 특징을 잘 알고 그것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할것이다.